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

신규과제 FAQ

2012. 5.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CONTENTS

1. 2012년 핵심연구사업 운영방향	1
2. 신청자격 관련 사항	2
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 요건	2
나. 사업 참여 제한	2
다. 연구참여자 구성 및 자격요건	4
라. 비전임 교원의 연구과제 신청	4
3. 신청 관련 사항	5
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	5
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	5
다. '최초 지원과제'와 '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의 차이	5
라. 동일 사업 내 동시 신청	5
4. 연구계획서 관련 사항	7
가. 연구자 번호 확인방법	7
나. 위탁연구과제 편성	7
다. 교수급 연구원의 참여연구원 참여	7
라. 신청용 연구계획서 영문 작성	7
마. 기관코드 확인방법	7
바. 연구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연구업적 등록방법	7
사. 연구비 입력시 자동합산	7
아. 대표적 연구업적 기술방법	7
자. 연도별 연구비 기재 방법	7
차. 연구계획서 중 연구내용 작성 분량	8
카. 신청서 간접비 작성 여부	8
타. 연구계획서 표지 중 전공 작성방법	8
5. 연구비 관련 사항	9
가. 인건비와 직접비 편성비율	9
나.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 산출방법	9
다. 미지급용 인건비 계상방법	9
라.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정의 및 해당여부	9
마. 학생 인건비 풀링제로 계상한 인건비의 잔액 처리	9
바. 학생인건비 man/month 투입총량은 작성방법	9
사. 연구수당은 계상방법	10
아. Post-doc의 인건비 지급기준	10
자. 공동연구의 연구비 지급(공동연구원)	10

1. 2012년 핵심연구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니까?

➡ 2012년 핵심연구사업은 아래와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비고
목적	과학기술 전문야(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 포함)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 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		
지원분야	과학기술 전문야(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 포함)		
신규예산 (백만원)	상반기 공모	하반기 공모	최초지원과제 및 추가지원과제 ^{주1}
	33,500	17,277	
연구형태	개인연구 및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과제당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구 : 78백만원 내외 (<u>간접비 별도</u>) ■ 공동연구 : 156백만원 내외 (<u>간접비 별도</u>) 		'12년부터 직접비, 간접비 분리지급
지원기간	3년(최대 6년(3+3 ^{주2}))		
연구개시일 (예정)	2012.5	2012.9	
접수방법	연구사업 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온라인 신청		
평가방법	패널별 토론평가 → PM 협의체 →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		

※ 주¹ : 신규과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최초지원과제'와 '12년 종료과제 중 성과우수과제에 한해 평가를 거쳐 3년간 지원하는 '추가지원과제'로 구분

※ 주² : 3년차마다 평가를 통해 상위 15% 내외 우수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를 3년간 추가지원

2. 신청자격 관련 사항

가.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는 누구나 3책5공의 범위 내에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급	비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Post-doc, 박사급연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가 신청 마감일 전일('12.6.00)까지 제한 조치가 종료될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어떠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까?

- ➔ 3책 5공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3책 5공제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제한한 제도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부처 사업도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시 주관연구 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제의 참여자격은 해당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5개 과제입니다.
- ➔ 단, 다음 사업은 3책 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이 발주하지 않고 정부출연연구소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기본사업이라 합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BK21 사업
- 위탁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관련 참여제한 사항

- 1) 창의적연구사업: **주관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
 -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주관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연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리
 -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 (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 연간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다. 연구참여자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참여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Post-doc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 포함)
연구보조원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 ➔ 핵심연구사업 중 공동연구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와 다른 기관 소속 교수급 연구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비전임 교원도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주관연구기관과 반드시 고용계약(4대 보험 등을 포함한 전속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신청 관련 사항

가.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사람은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 도약연구)을 수행중인 사람은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수행중인 동일 사업단위의 사업연구는 신청 불가
- 도약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핵심연구 신청 불가
-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13.6.30) 종료 시는 핵심연구 신청 가능

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 가능한 신규과제는 몇 개입니까?

- ➔ 현재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연구 내 개인·공동연구 중 1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신규과제 중 '최초 지원과제'와 '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 '최초 지원과제'란 올해 처음 지원되는 과제를 의미하며, '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는 '12년 종료되는 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주관연구책임자)를 향후 추가 지원(3년)하는 과제입니다.
- ➔ 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는 '12년 8월 종료과제(공동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3책5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수행중인 과제(공동연구)의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라. 동일 사업 내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 ➔ 핵심연구사업 내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지원 1개 과제와 추가지원 1개 과제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두 선정권일 경우에는 한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핵심연구				
				개인	공동		추가지원(공동)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중인 사람	핵심 연구	개인	연구책임자	×	×	×	×	×
		공동	연구책임자	×	×	×	×	×
	공동연구원		×	×	×	×	×	
	도약 연구	도전	연구책임자	×	×	×	×	×
		전략	연구책임자	×	×	×	×	×
	핵심연구 종료과제	공동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		
수행하지 않는 사람				○		×		

※ ○ : 가능, × : 불가능

- ➡ 단, 핵심연구 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모든 신청과제는 무효처리됩니다.
- [사례1] 핵심연구 내 개인연구 1개 과제, 공동연구 1개 과제(공동연구원 포함)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사례2] 핵심연구(공동연구) 공동연구원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핵심연구 신청시(공동연구원 포함) 모두 무효처리
 - [사례3] 도약연구 수행 연구자가 핵심연구 신청시 무효처리
 - [사례4] 핵심연구 내 2개 과제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단, 최초지원, 추가지원 각 1개 과제 동시신청 가능)

4. 연구계획서 관련 사항

가. 연구자 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연구업적등록 클릭 → 기본 인적 사항에서 '연구자 등록번호' 확인

나. 위탁연구과제를 편성할 수 있습니까?

- ➔ 핵심연구는 위탁연구를 불허합니다.

다. 교수급 연구원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 ➔ 핵심연구사업 중 개인연구는 개인단위의 연구이므로 교수를 참여연구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불허하며, 공동연구는 교수를 공동연구원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인은 영문으로 신청용 연구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까?

- ➔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청용 연구계획서 중에서 '연구내용'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 가능하나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표>부분은 한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 기관코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시스템(<http://ernd.nrf.re.kr>)의 첫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연구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연구업적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http://www.kri.go.kr>)

사. 연구비 관련 표의 칸 수를 늘릴 경우 자동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 ➔ 각 항목에 기재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복사-붙여넣기)등을 이용해서 칸 수를 늘려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합계란의 블록계산을 다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표적 연구업적에 어떤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까?

- ➔ 연구계획서 중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의 '대표적 연구실적'에 기술된 내용(논문명/특허명/기타)을 요약하여 **2페이지 이내**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연도별 연구비를 기재하는 란이 3개('12~'14년)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 연구계획서의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상의 연구비는 연구하고자 하는 기간 전체의 연구비를 입력하고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에는 1차년도 연구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예를 들어, 핵심연구사업 수행 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3년을 신청할 경우,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 모두에 3년치의 연구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 연구계획서 중 연구내용 부분은 반드시 3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까?

- ➡ 연구내용 부분은 반드시 30쪽 이내로 작성하셔야 하며, 초과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신청시 간접비는 작성해야 합니까?

- ➡ 연구과제 선정 후 일괄적으로 간접비를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신청자께서는 간접비를 기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 연구계획서 표지 중 전공은 무엇을 입력하는 것입니까?

- ➡ 의약학 분야의 과제 신청시만 해당되며, 의·치·한의대에 소속된 연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 계획서 1페이지 '전공'부분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속 교실이 없으면 본인의 세부전공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 전에 KRI(<http://kri.go.kr>)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세부전공(교실)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방법은 해당 기관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비 관련 사항

가. 인건비와 직접비 편성비율 및 각각 산정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인건비와 직접비의 편성비율은 따로 없으며, 신청자가 임의로 정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나.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

다. 미지급용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합니까?

➔ 최대 3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초과계상하면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단, PBS 적용기관 소속 연구자는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하실 수 없습니다.
 ➔ 외부인건비의 미지급 인건비는 표에 작성하지 않으며 연구비 총괄표 등에만 기재합니다.

라. 학생인건비 폴링제란 무엇이며 소속기관이 폴링제 적용 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학생 인건비 폴링제란 대학 연구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한 제도로써 완전 폴링제 및 부분 폴링제가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폴링제 적용 여부는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핵심연구사업 중 공동연구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만 학생 인건비 폴링제가 적용됩니다.

마. 학생 인건비 폴링제로 계상한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 폴링제 실시 기관은 인건비 총액으로 계상·집행하므로 연구보조원을 추가하거나 차년도로 이월·집행할 수 있으며 직접비로 전용도 가능합니다.

바. 학생인건비 man/month 투입총량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man/month 투입량은 해당 학위과정생의 1개월 간 예상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과제 참여율이 90%인 석사과정생 A의 참여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율이 20%인 박사과정생 B의 참여기간이 4개월인 경우 man/month 투입총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

- 석사과정A를 12개월 동안 9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12개월×90% = 10.8
 그러므로 1,800(천원) × 10.8 = 19,44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연구계획서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	박사과정	2,500	0.8	2,000	
*****	석사과정	1,800	10.8	19,440	

사. 연구수당은 어떻게 계상합니까?

- ➡ 지급·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 총액의 최고 20%까지 자율적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 Post-doc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

- ➡ 소속기관의 Post-doc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하면 됩니다.

자. 핵심연구사업 중 공동연구의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 연구비 전액을 지급하며, 해당 기관은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 일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연구원은 희망시 연구비 카드를 통하여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고 사용실적은 주관연구책임자가 관리해야 합니다.